## 직무상위법행위와의 투쟁을 강화하는것은 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한 요구

최 영 철

오늘 우리의 국가기관 일군들은 사회주 의강성국가건설의 앞장에 선 대오의 기수 들이며 인민의 참다운 충복들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강성국가건설에서 국가 기관 일군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시여 그들이 국가 로부터 부여받은 직무를 옳바로 수행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밝혀주 시였다.

국가기관 일군의 직무는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직책상분공이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헌신할데 대한 인민대중의 신임이다.

만일 국가기관 일군들이 자기의 직무를 벼슬자리로 여기면서 그 어떤 특전, 특혜 를 받으려 하거나 직권을 악용하여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것과 같은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인민의 신임을 저버리는 행 위로서 당과 국가로부터 대중을 리탈시키 고 국가기관의 사업체계와 사업질서를 문 란시키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시킬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 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위법현상은 당과 혁명의 리익, 사회와 인민의 리익을 좀먹고 국가사회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이며 그런 현상과는 라협없이 투쟁하여야 합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0권 144폐지)

직무상위법행위는 국가기관 일군들이 맡겨진 혁명초소에서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옳바로 수행하지 않고 자기 직위와 직권을 리용하여 국가관리질서와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엄중한 위법행위이다.

국가기관 일군들속에서 나타날수 있는

직무상위법행위와의 투쟁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한 요구로 나 선다. 그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직무상위 법행위와의 투쟁을 강화하여야 국가기관 일군들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 과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모든 국가기관 들에 혁명적인 사업질서를 확립하고 온 사 회에 혁명적규률을 철저히 세울수 있기때 문이다.

직무상위법행위와의 투쟁을 강화하는것이 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국가기관 일군대 렬의 순결성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당의 높은 정치적신임에 의하여 국가와 사회를 관리하는 직무를 맡은 국가기관 일 군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리론으로 인민대중을 무장시키며 그들을 이끌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구상을 실현하며 인 민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여야 할 중요한 임무를 지니고있다. 높은 당성, 로 동계급성, 인민성으로 일관된 국가기관 일 군들의 활동을 통하여 인민들은 당정책 의 정당성을 깊이 파악하고 어머니당의 품 의 따사로움을 절감하게 되며 당에 대한 충정의 마음을 간직하게 된다.

국가기관 일군들은 인민대중속에서 당의 대변자의 위치에 있으며 당정책집행의 조직자, 철저한 관철자이다.

국가기관 일군들이 당정책을 반영한 법 규범과 규정을 어기는 위법행위를 하면 인 민대중이 그들을 믿고 따르지 않을뿐아니 라 나아가서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는 엄 중한 결과를 초래시킬수 있다.

국가기관 일군들속에서 발로될수 있는 직권람용, 월권행위, 직무태만과 같은 위 법행위는 당의 권위와 당과 수령께 충정 다하려는 인민대중의 열의를 저락시키고 당 의 로선과 정책관철에 막대한 저애를 가 져온다. 그러므로 직무상위법행위와의 법 적투쟁을 강화하는것은 인민대중으로 하여 금 당과 수령을 굳게 믿고 당과 수령을 따 라야만 자신의 운명도 혁명과 건설도 승 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는 확고한 신 념을 가지게 한다.

국가기관 일군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국가활동의 전력사적행정에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혁명적원칙이다.

국가기관 일군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한다는것은 국가기관 일군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정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닌 열렬한 **김일성-김정일**주의정수분자들로 꾸린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국가활동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국가의 모든 분야에 구현 해나가는 국가기관들의 활동이다. 따라서 사회주의국가의 핵심력량으로서의 국가기 관 일군대렬은 마땅히 당과 수령에 대한 끝 없는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 신을 지닌 일군들로 튼튼히 꾸리고 그 순 결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일군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는 사업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한다면 사회주의국가의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성격을 고수할수 없으며 그 존재자체도 유지할수 없게 된다. 시대와 혁명이 전진하고 세대가 바뀌여도 국가기관 일군대렬의 순결성을 대를 이어 철저히 보장하여야 사회주의국가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실현하는 정치적무기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수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복귀된 이전 동유럽의 사회주의나라들에서의 력사적교훈이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다. 이 나라들에서는 국가기관 일

군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는 사업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않은 결과 혁명적단련이 부족하고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투철하지 못한 우연분자, 아첨분자들이 국가기관 일군대렬내에 기여들어 혁명과 건설에 엄중한 해독을 끼치였다. 국가기관 일군들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 뢰물과 부정부패현상이 성행하여 당과 국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리였으며 사회주의배신자들에 의하여 선대수령의 사상과 업적이 모독당하고 나중에는 사회주의가 좌절되는 비극적인 사태가 빚어지게 되였다.

오늘의 선군시대는 국가기관 일군들속에서 나타날수 있는 직무상위법행위와의 법적투쟁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기관 일군대렬의 순결성을 백방으로 보장하여 국가기관 일군대렬을 당에 무한히 충실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의 대오로 준비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

국 가 기 관 일 군 들 이 위 대 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철저히 무장하고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체질화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억세게 준비하여야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횡포한 반사회주의, 반 공화국책동을 짓부시고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준엄한 투쟁에서 그 어떤 동요나 변심을 모르고 당과 운명을 함께 하며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할수 있다.

직무상위법행위와의 투쟁을 강화하는것 이 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 은 다음으로 그것이 혁명과 건설에서 인 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 이 발양시킬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가장 힘있는 창조적능력의 소유자이다. 혁명의 승리와 강성국가건설의 성과여부는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어떻게 발양시키는가에 달려있다.

국가기관 일군들은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조직동원하는 혁명의 지휘성원 이다.

국가기관 일군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끝 없는 신뢰심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가지고 모든 일에서 이신작칙하며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대중은 그들을 믿고 따르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적극 발양할수 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부족하고 인민을 존중하지 않으며 국가의 법을 위반하는 국가기관 일군은 인민대중과 호흡을같이할수 없으며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로조직동원할수 없다.

국가기관 일군들이 자기의 직위를 관료 직으로 여기고 직권을 망탕 행사하게 되 면 당과 국가, 사회와 인민의 리익을 침해 하게 되며 인민대중의 불평불만을 야기시 킨다. 인민대중은 이러한 국가기관 일군들 을 믿고 따를수 없으며 그들의 지시도 집 행하지 않게 된다.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반영되여있는 법규범과 규정을 무시하고 리기적목적으로 직무를 태만하거나 전횡을 부리는 일군의 행위는 사회주의제도의 영상을 흐려놓으며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발전시키려는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떨어뜨릴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국가기관 일군들의 직무상위법행위는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억제하고 마비시키는 위험한 독소이며 주체혁명위업수행을 방해하는 독소이다.

직무상위법행위와의 투쟁을 강화하는것 이 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 은 다음으로 그것이 국가기관사업에서의 옳 바른 사업체계와 질서를 확고히 세울수 있 게 하기때문이다.

가장 조직화된 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 서는 사소한 무정부주의적이며 자유주의 적인 요소도 허용될수 없으며 강성국가건 설도 정연한 사업체계와 질서속에서만이 성 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국가기관들의 사업체계 와 사업질서는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 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실현하며 사업에 서의 성과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 게 하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업체계와 질서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관리운영되며 그 사업체계와 사업질서는 국 가의 법규범과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다.

국가기관 일군들이 법규범과 규정을 어기고 자기의 임무와 권한에 없는 행위를 망탕하거나 직위와 직권을 함부로 행사하면해당 부문,해당 단위에서 정연한 사업체계가 마비되게 되며 국가사업전반에서 무질서와 무규률이 조성되여 혁명과 건설을망쳐먹을수 있다.

국가기관 일군들은 해당 부문, 해당 단위에서 책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중요한임무와 권한을 부여받고있는것만큼 그들의 직무상위법행위가 국가사회생활에 미치는 후과는 매우 크다.

사회주의사회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유기적련관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국가기관 일군들의 직무상위법행위로 인한 사업체계와 질서의 문란은 국가기관사업에서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기관 일군들의 직무상위 법행위는 단순한 개인적문제가 아니라 혁 명과 건설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커다란 사 회적문제로 된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은 직무상위법행위 와의 투쟁이 가지는 중요성을 옳바로 인 식하고 그것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힘있 게 벌림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참 된 혁명전사로서의 영예로운 본분을 다하 여야 할것이다.